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57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승원 · 이강일 · 민병덕
박상혁 · 이정문 · 강준현
박범계 · 권칠승 · 김용만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발행인에게 증권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는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

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

조까지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경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⑧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을 작성(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1항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를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119

조제7항 및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⑧ (생략)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이 경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는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⑧ (현행과 같음)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u>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

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경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5. (생략)

③ ~ ⑦ (생략)

<신설>

<신설>

을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을 작성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하
다)하기 위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인의 동
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
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u>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u>)·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 -----(<u>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외한다</u>) ---- -----. ② (현행과 같음)
--	---